

#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·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'99-20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5 . 29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폐지사유

-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호적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고 있으며, 호적과태료부과·징수에 대한 법률위임근거가 없는 등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폐지

## 폐지근거

- 호적법 제132조의2
-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

#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 · 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 ·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